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 298 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명서



2023. 7.

서 민 우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서 민 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이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081
----------	----------

발의연월일: 2023. 7. 7.

발의자: 서민우, 박정환, 황국주,
장호섭, 김장관, 김해철,
강한곤, 정순옥, 도하석,
김기열, 권숙자, 고명욱,
이선주, 정창근, 남현주,
이진환, 손범구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붙임 1
- 나. 관계법령 : 붙임 2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 다. 비용추계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2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 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 나. 생략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 바. 생략

붙임3

타 자치단체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정) 2023.06.30 조례 제16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9]

(제정) 2023.03.09 조례 제17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